

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2705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. 11. 10. 허옥희 의원 등 6인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11. 21.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3. 11. 28. 의회운영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개정이유

-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개정(2023. 8. 30. 공포·시행)된 사항을 우리군 의회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법령 개정에 따라 수수 가능한 선물의 범위 등을 확대 (안 별표 2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-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다.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3-39호
- 예고기간: 2023. 11. 13.(월) ~ 2023. 11. 20.(월)
-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: 의견 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개정됨에 따라 농수산물·농수산가공품의 선물 수수 상한액 상향 및 선물의 허용 범위 변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
-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2 제3호 본문 중 선물의 범위를 추가하였으며, 같은 표 비고에 농수산물·농수산가공품의 상한액 및 상품권의 정의 등 기타 세부사항을 신설하였음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6. 질의 및 답변요지: 없음.

7. 토 론 : 없음.

8. 심사결과 : 2023. 11. 28. 원안가결